

-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 : **2.7%이내**
-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이하 : **2.2%이내**
-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이상 : **1.2%이내**

- 다만, 상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85%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2.2%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상기기준과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75% 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2.7%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 **다음 각 인건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시 제외한다.**

- 법정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성과급 : 「국가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자산운용 평가성과급,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도입·확산방안(17.9.28)」에 의한 성과급 인센티브(제도도입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한다)
- 대체인력 인건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항내지 제6항 및 전환형 시간선택근무자 대체충원에 따라 한시적(3년이내)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간선택제 일자리예비비
- 기타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임원 인건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수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만원미만 절사)을 말한다. 다만, 연도중 총인건비 인상을 이외에 베이스 조정이 있는 기관은 동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소속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소속기관간 인상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과연봉제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을 차등적용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기본연봉의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기본연봉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본연봉 차등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다.

※ 2021년도 공공기관 평균임금 : (정규직 평균) 6,835만원 (무기계약직 평균) 3,783만원